

『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1월 5일

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, 보급, 향토사 발굴, 조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구미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보조금의 지원범위(안 제6조)
- 기금의 조성(안 제9조)

-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10조)
- 문화행사, 문화기반시설 위탁(안 제 16조)
- 공무원의 파견 (안 제17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, 보급, 향토사 발굴, 조사 및 지역문화 행사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구미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문화원의 보조금 지원 등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기금의 운용관리,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6조에서는 지역문화 행사 및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17조에서는 지역문화

진흥을 위하여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구미시 소속 직원을
파견 근무하도록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지역의 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해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 문화의 계발, 보급,
보존, 연구,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시민
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
사료되나
- 사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의
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